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10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산림재난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9470	서천호의원	'25.3.31	
	2209551	윤준병의원	'25.4.2	
	2209749	김대식의원	'25.4.11	
	2209836	김선교의원	'25.4.15	
	2209843	김예지의원	'25.4.15	
	2209893	박덕흠의원	'25.4.16	
	2210054	이성권의원	'25.4.23	
	2210468	김소희의원	'25.5.12	
	2210793	여기구의원	'25.6.13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0.) 상정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2211011	이병진의원	'25.6.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8.21.)
	2211063	이학영의원	'25.6.25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0.) 상정
	2211244	강득구의원	'25.7.3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5244	문금주의원	'25.12.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6.1.16.)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0.) 상정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0720	조계원의원	'25.6.11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0.) 상정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에서 위 1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지역주민 및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

였음. 산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에는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 확보,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

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의 예시에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를 추가함(안 제16조제7항).

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매수·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제26조제1항).

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76조 및 제79조).

자.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법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신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등”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으로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산지(입목)”을 “토지(산지의 입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산불피해”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p> <p>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 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② ~ ⑧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p> <p>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u></p>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생략)
<신설>

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략)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
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
(입목·죽을 포함한다)나 산사
태취약지역과 연결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
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특별자치도지사-----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

-----토지
(산지의 입목-----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제76조(벌칙) ① (생략)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생략)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불 진화에 소요
된 비용 및 산불피해-----

-----.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2년-----
-----.

③ (현행과 같음)

④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제7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

<신설>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5천만원-----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300만원-----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00만원-----
-----.

⑤ -----
-----70만원-----
-----.

1.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